

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[별표 2의4] <개정 2023. 11. 29.>

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

과 명	분 장 사 무
총무과	1. 서무, 인사, 문서, 연금, 통계, 표창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관인의 관수 2. 자료관리 업무의 계획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. 도서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. 법원역사의 편찬과 법원사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.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자료편찬과	1. 판례공보 등 편찬 발간에 관한 사항 2. 사법자료의 수집, 정리,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
자료기획과	1. 도서관 자료의 수집, 배부, 등록, 제적, 보관전환 및 자료교환에 관한 사항 2. 자료의 목록작성 및 분류에 관한 사항 3. 각종 서지에 관한 사항 4. 각급법원 및 기관도서관의 도서관업무지도·교육에 관한 사항 5. 도서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지식운영과	1. 도서관 자료의 열람, 대출, 보존, 관리 및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2. 사법정보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의 개발·운영에 관한 사항 3. 법원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. 홈페이지 등 대국민 사법지식정보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. 사법영상서비스(법원TV)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. 종합법률정보 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.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